

『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- 2022년도분 지방채 발행 ⇨ 7,000백만원
 -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: 3,000
 - 들성산림공원 조성사업 : 2,000
 - 오태공원 조성사업 : 2,000

3. 제안이유

가. 문화체육관광국

- 문화예술과
 -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(2022) : 3,000백만원
 -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역사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, 시립민속관을 이전하여 시민들의 향토문화 체험 공간 조성

나. 환경교통국

- 공원녹지과
 - 들성산림공원 조성사업(2022) : 2,000백만원
 - 도시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문성리 지역에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가족 중심의 친환경 여가 공간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
 -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나 장기간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신속한 보상으로 사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 등 예방

- 오태공원 조성사업(2022) : 2,000백만원
 - 기 조성된 왕산기념관 주변에 독립을 주제로 한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왕산허위선생을 비롯한 구미시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추모하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
 -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주민이용도, 도시개발 진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우선 관리 대상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(공원)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나
 - 보상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신속한 보상으로 사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 등 예방

4. 발행 개요

○ 2022년 지방채 발행

(단위 : 억원)

부서명	사 업 명	신청액	소관	비고
계	2개 부서, 신청 3건	70		
문화예술과	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	30	기획행정위	
공원녹지과	들성산림공원 조성사업	20	산업건설위	기발행 40억원
	오태공원 조성사업	20		

5. 근거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제1항 및 제2항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제1항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항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

6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3개 사업 7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,
-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마련과 대규모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2년도 3개 사업 7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임.

○ 검토 결과,

-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며,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22년도 476억원으로 이번 지방채 발행 규모는 행정안전부의 한도액 범위 내에 있음.
- 지방채 발행에 따라 2021년 말 구미시 지방채 총 규모는 2,115억원으로 2020년말(2,098억원)보다 17억원 증가하고, 2022년에는 2,085억원[2,115억원(2021년말) + 70억원(2022년도 발행분) + 35억원(2022년도 발행예정분) - 135억원(상환)]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.
- 금회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은 모두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,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적기에 조달함으로써 주민수혜도가 높고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시의 채무부담도가 비교적 높아 신중한 지방채 발행 및 사업의 필요성,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